



문서번호	지역경제과-7726
결재일자	2015.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기업활성화팀장	지역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유민	차영수	김광호	전결 03/13 김종순	
협조	창조경제추진단장 임채선			

- 수제화 장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

# '15년 성수 수제화 교육 사업계획

2015. 3.



**성 동 구**  
**(지역경제과)**

∴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 업 구 분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공약(약속)사업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인센티브/공모사업 <input type="checkbox"/>
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 민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전 문 가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이 해 당 사 자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ul>
기 타 고 려 사 항	일 자 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환경영향 <input type="checkbox"/> 안 전 <input type="checkbox"/> 유지비용 <input type="checkbox"/> 바른 공공언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 인 지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 <input type="checkbox"/> 장 애 인 <input type="checkbox"/> 디 자 인 <input type="checkbox"/> 갈등발생 요인 <input type="checkbox"/>
타자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 앙 부 처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서 울 시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기 업 : 유 <input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li>● 민 간 단 체 : 유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무 <input type="checkbox"/></li> </ul>
언 론 홍 보 계 획	기획보도 <input type="checkbox"/> 보도 자료 <input type="checkbox"/> SDTV <input type="checkbox"/> 성동뉴스레터 <input type="checkbox"/> 성동구소식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 고 문 <input type="checkbox"/> 전자행정서비스 <input type="checkbox"/> S N S <input type="checkbox"/> 기타(리플릿 등) <input type="checkbox"/> 없 음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 보 제 목 :</li> <li>● 중점 홍보사항 - -</li> </ul>	
<p>※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p>	

- 수제화 장인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

# '15년 성수 수제화 교육 사업계획

수준별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역특화 산업인 성수 수제화의 우수한 인력 양성을 통해 전통산업 계승의 발판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인프라 구축

## I 추진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15조(인력확보의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수준 향상,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
- 성동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산업인력 지원)
  - 구청장은 유치한 기업에 대한 조기 가동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이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공모절차 제외)

## II 필요성

- 개수임금제 형태의 수제화 산업 특성으로 현장에서 기술 습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 부재
- 체계적인 장인기술 전수를 통한 젊은 장인 양성 필요

## 목표

수제화 우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수제화 산업의 전통계승 및 발전



수준별 맞춤  
교육과정 개설

개인별  
심화학습 및  
실습 지원

수료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추진전략

교육환경개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다양한 취·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재료 검수(區)</li> <li>○ 필요 장비 및 기구 지원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석부 비치 및 관리 철저</li> <li>○ 온라인 교재를 활용한 교육 표준화 실현</li> <li>○ 수료 후 실습공간 제공 통한 재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취업정보 제공</li> <li>○ 공방, 쇼핑몰 창업 등 정보 지원</li> </ul>

## 〈 총 평 〉

- 수준별 교육시스템 마련 및 불필요한 교육과정 통합으로 체계적인 교육기반 마련
- 온라인 교재 활용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고정강사 확보를 통해 수료율 및 취·창업률 향상 제고
- 교육 초반 잦은 강사 교체 문제 등은 보완 필요

- 교육기관: 한국제화아카데미,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총 사업비: 150백만 원(한국제화아카데미 120,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0)
- 한국제화아카데미 ⇨ 기초반 운영
  - 교육과정: 상반기(4~7월), 하반기(8~11월)/16주교육
  - 교육내용
    - 갑피, 저부, 패턴 공정을 나눠 교육하는 전문화 과정
    -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한 구두제작 교육 및 수료 후 취창업 지원
  - '14년 수료 및 취창업 실적

훈련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창업 인원	취창업률
60	50	83%	19	31%

- 상반기 교육(4~7월): 교육인원 30명 중 27명 수료, 14명 취업
- 하반기 교육(8~11월): 교육인원 30명 중 23명 수료, 5명 취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 기초반 · 심화반 운영

○ 교육과정: 2014. 4. ~ 12.

○ 교육내용

- 분야별 전문실습, 특수맞춤형 구두제작
- 교육장 무료개방으로 강사지도 및 자율 실습학습

○ '14년 수료 및 취창업 실적

훈련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취창업 인원	취창업률
27	18	66%	1	3%

- 기초 및 심화 2개반 운영(수료 18명, 취업 1명)
- 교육기관 간 연계사업으로 한국제화 아카데미 수료생 2명 심화반 흡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공통)

○ 표준화된 수제화 교육교재 부재

- 온라인 교재를 활용하여 기관별 표준화된 교육 실시

○ 예산배정 지연으로(5월 중순) 운영 전반 사업 지연

- 조속한 예산배정 등 행정지원에 만전

○ 재료비 지출 비율에 비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실습에 어려움을 겪음

-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

○ 경기침체 및 열악한 공장 환경으로 취업률 저조

- 성수 수제화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근무환경 인프라 구축

## ① 사업개요

교육기간: 2015. 4. ~12.

교육주체: 2개 기관

○ 한국제화아카데미(기초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기초반, 심화반)

교육대상

○ 수제화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제화업계 취업 및 창업 희망자

교육과목: 패턴, 갑피, 저부, 구두이론

○ 온라인 수제화 제작 교과서에 맞춘 표준화 교육 실시

총 사업비: 150백만 원(시비)

(한국제화아카데미 120백만 원, 소상공인특화지원센터 30백만 원)

한국제화아카데미(기초반) 교육계획: 60명

구 분	기 간	모집 인원	교육내용	모집대상
기초반 (월, 수, 금) (오전/오후)	상반기 '15. 4. ~ 7. (16주 교육)	30명	· 기초이론 및 실습 · 분야별 전문화 실습과정	전문화 과정 필요 구직자
	하반기 '15. 8. ~ 11. (16주 교육)	30명	· 기초이론 및 실습 · 분야별 전문화 실습과정	전문화 과정 필요 구직자

소공인특화지원센터(기초/심화반) 교육계획: 총60명

구 분	기 간		모집 인원	교육내용	모집대상
기초반 (월,수,금)	상반기	'15. 4. ~ 7.	각15명	기초이론 및 실습, 구두디자인 교육 등	제화분야 입문자
	하반기	'15. 8. ~ 11.			
심화반 (화,목)	상반기	'15. 4. ~ 7.	각15명	족부 해부학, 인솔제작,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기존 수료생 및 희망자
	하반기	'15. 8. ~ 11.			

**2 세부추진계획**

교육과정

**기 초 반**

- 교육목표: 공정 분야별 실습과정 및 구두제작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제작 기술 습득을 통해 취업의 발판 마련
- 교육일정: '15. 4. ~ 11.(반기별 월,수,금 16주 교육)
- 모집인원: 연간 90명 내외
- 교육내용: 구두 기초이론, 제조공정 분야별 실습 및 제작

**심 화 반**

- 교육목표: 우수 장인인력 양성 및 취업시장의 경쟁력 제고
- 교육일정: 2015. 4. ~ 11.(반기별 화,목 16주 교육)
- 모집인원: 연간 30명 내외
- 모집대상: 2014년 수제화 교육 기초반 수료자(우선) 및 희망자
- 교육내용: 저부, 갑피, 특수 맞춤형 구두(장애인용)등 분야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 시 기: 12월 중순, 성수 구두테마역
- 참 가 자: 市, 區 관계자, 지원기관관계자, 제화업체, 지역주민 등
- 주요행사: 작품전시회, 수제화 제작 사진 및 교육 사진 전시
  - 작품전시회 및 전문가 평가, 수제화 제작 사진 및 교육사진 전시
  - 아기모카신 만들기 체험행사, 구두 증정 추첨 이벤트

**강사운영**

연번	해당반	강 사 자 격	
1	기초반	이론	교육관련 유경험자
		실기	제화업계 10년 이상 종사자
2	심화반	이론	교육관련 유경험자
		실기	제화업계 20년 이상 종사자

**총 사업비: 150백만 원(시비)**

교육기관	교부 예정액	비 고
한국제화아카데미	120백만 원	상·하반기 각각 30명씩 기초반 운영
소공인특화지원센터	30백만 원	'15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 단체 연계 교육추진

○ **공모절차 생략**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제4호에 의거 성수동 내 '성수수제화 특화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민간 수제화 교육기관이며 2014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민간단체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공모절차 생략

- 위탁운영 약정서 체결 시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인지하게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투명한 사업비 정산 유도

### 3 세부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주관
'15. 3. 13.	사업기관과 약정서 체결	교육기관 ↔ 區
	↓	
'15. 3. 16.~3. 30.	상반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기관
	↓	
'15. 4. 6.~7.29.	상반기 교육개강	교육기관
	↓	
'15. 7. 31.	상반기 교육수료 및 작품전시회	교육기관
	↓	
'15. 7.13.~7.31.	하반기 교육생 모집 및 선발	교육기관
	↓	
'15. 8. 31.	상반기 정산 및 교육평가	區
	↓	
'15. 8. 3.~11.25.	하반기 교육개강	교육기관
	↓	
'15. 12. 9.	하반기 교육수료 및 작품전시회	교육기관
	↓	
'16. 1. 26.	사업정산 및 교육결과보고	區 → 市

## VI

### 기대효과

- 수제화 산업을 이끌 신진 기능인력 양성
- 체계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영세사업장 고용능력 향상 인프라 조성
- 취업을 위한 관련 기술 습득으로 구인자 취업 경쟁력 향상

## VII

### 행정사항

- 수제화 교육 개강 홍보
  - 區 소식지 게재: 3. 16.
  - 홈페이지(區, 중소기업종합센터)를 통한 홍보

- 붙임 1. 소식지 홍보자료 1부
2. 지방보조금 교부사항 1부
  3. 성수 수제화 교육 위탁운영 약정서(안) 1부
  4. 사업운영 계획서 1부
  5. 예산운용 계획서 및 사업비 편성기준 각 1부. 끝.

## 붙임 1 <區 소식지 홍보자료>

### '15년 제13기 한국제화아카데미 수제화 교육생 모집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특화산업 일환으로 성수2가 소재 한국제화아카데미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성수동 수제화산업의 전통을 이어갈 예비 구두장인 양성을 위해 한국제화아카데미 13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 강 좌 명: '15년 제13기 「한국제화아카데미 수제화 교육생 모집」

▪ 모집대상

- 제화관련 취업,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나이 상관없음)

▪ 신청서접수 및 면접

- 2015. 3. 16.(월) ~ 2015. 3. 30.(월)

- 오전10시 ~ 오후18시까지 방문접수 및 면접

▪ 신청시 필요서류

수강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장,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제화아카데미(<http://cafe.daum.net/handmadeshoe>)

→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출력

▪ 합격자 발표

- 4월 3일(금) 개별 통보

▪ 교육내용

훈련과정	요일	시간	모집 인원	교육내용	모집대상
기초A반	월,수,금	10시~12시	15명	저부, 갑피 훈련 (이론, 디자인교육 포함)	제화 관련 취업, 창업희망자
기초B반	월,수,금	14시~16시	15명		제화 관련 취업, 창업희망자

-화, 목은 자율 교육 실시(10시~18시 실습장 개방).

▪ 교육기간 : 2015. 4. 6.(월)~7.29.(수)

▪ 교 육 비 : 전액무료

▪ 교육장소: 한국제화아카데미(성수역 1번 출구 위치)

▪ 문의전화: 02)461-9233(한국제화아카데미)

## 붙임 2 <지방보조금 교부 사항>

### <지방보조금 집행 원칙>

- 근거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
- 적용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공모: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공모절차 제외
    -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붙임 3. <성수 수제화 교육 위탁운영 약정서>

## 성수 수제화 교육 위탁운영 약정서(안)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사업수행기관인 “ ”(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간에 『15년 성수 수제화 교육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기간) 지원기간은 약정서 서명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3조(당사자의 의무) ① “구”는 “교육원”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사업)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수제화 기초교육과정 운영) 교육인원은 연 60명 내외로 하며 구두 기초이론 및 실습과정을 포함한 기초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구인 및 구직 연계활동) 연 4회 이상 제화업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구직업체 및 구인수요를 파악하여 구직자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3. (취업 및 창업사항 DB구축) 교육생 및 수료자의 취업 및 창업실태를 DB로 구축하고 수시로 자료를 갱신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 “교육원”은 사업진행 시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 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

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교육장의 안정적인 유지관리 및 교육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전기 안전, 이용자 보험 등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 약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의 지원) ① “구”는 『15년 성수 수제화 교육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 ”을 지원한다.

② 보조금은 “교육원”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되, 예산편성내역이 편성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은 사업비로만 지원하며 운영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 “교육원”은 보조금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보조금의 관리) ① “교육원”은 보조금을 별도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와 “교육원”은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며, 사업수행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내용 등의 변경) “교육원”이 사업 수행 중에 사업내용 및예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① “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원” 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교육원” 이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육원”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교육원” 이 특정 정당이나 단체를 지원하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5. “교육원” 이 교육과정 이외의 단체운동이나 집회 등에 교육생을 동원한 경우
- ② “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위탁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구”와 “교육원”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60일전에 상대측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 ① “교육원”은 “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교육원”은 보조금 회계처리 정산시 5회 이상의 지적사항이 발생하면 지적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원”은 사업추진 중에 일부사업을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교육원”은 사업종료 후에 미 집행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교육원”은 국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지원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경우 “구”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한다.

⑥ 부정 수급한 사업에 대해 약정해지하고, 부정수급한 기관은 약정해지일로부터 2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제13조(보조금의 정산보고서 제출)** ① “교육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의 정산보고서 제출에 따라 “구”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은 “구”가 정산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다.

**제14조(점검·평가)** ① “구청”은 “교육원”의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사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은 “교육원”에 대해 사업 이행실적 파악, 기타 관리감독을 위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의무)** ① “교육원”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중요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생겼을 시 즉시 ‘구’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원”은 상반기 교육종료가 되는 해당 월부터 매월 1회 교육생의 취·창업 실태자료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DB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교육원”은 “구”에 사업실적에 대한 보고를 반기별(8월, 12월)로 결과보고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에 대한 지출보고서 및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와 “교육원”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교육원”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3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정 원 오 (인)

대 표

(인)

## 붙임 4. <사업운영 계획서>

### 2015년 성수동 수제화 교육 사업운영 계획서

####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 인력 현황, ③ 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 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 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 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 현황 등)

####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 훈련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3]에 작성)

####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 붙임 5. <예산운용 계획서 및 사업비 편성기준>

### 2015년 성수동 수제화 교육 예산운용 계획서

1. 총사업비 : 만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출내역	비고
총사업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소계			

※ #1 사업비 편성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건비 (20%)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li> <li>•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li> </ul>
직접사업비 (65%)	시설·장비 유지 및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li> <li>•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li> </ul>
	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li> </ul>
	연계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li> <li>•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li> </ul>
	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li> </ul>
	강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li> </ul>
간접사업비 (15%)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li> </ul>
	사업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li> <li>•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li> <li>•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li> </ul>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li> </ul>